

과업지시서

[소방시설 시정보완공사]

2017. 2.

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

I. 공사개요

1.1 공사 과제

연세대원주캠퍼스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을 시정보완공사 시행함

1.2 공사 목적

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소방시설 시정보완공사를 수행하여 학교 시설에 대한 소방 법적사항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1.3 수행기간

- (1) 본 공사의 수행기간은 착공후 2017년 02월 26일까지로 한다.
- (2) 연세대학교 시설물(본부동,생활관동)을 공사기간내 공사하고 1일 이내에 학교에 공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.

1.4 공사수행방법

계약상대자(공사수행자)의 책임하에 모든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,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고 완벽한 설비가 되도록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1.5 공사대상 시설물 현황

- (1) 본부 : 노천극장,백운관,벤처센터,산학관,연세스포츠허브,연세플라자,정의관,도서관,청송관,학군단,학생회관,(11개동).
- (2) 생활관 : 매지1.2.3학사,세연1.2.3학사,청연학사.

II. 과업일반

2.1 총 칙

계약상대자(공사수행자)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소방시설 시정보완공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2.1.1 적용범위 및 기간

- (1) 본 공사는 소방설비(소화설비, 경보설비, 소화활동설비, 피난설비, 소화용수설비 등)의 전반에 대한 소방시설 시정보완공사에 적용한다. 본 과업은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와 체결한 공사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공사범위로 하며, 이에 수반되는 관련 일체의 행위 및 "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" 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시행한다. 건물별 시설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법령과 기술기준에 따른다.
- (2) 본 과업과 관련하여 "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" 의 승인 이후라도 그 내용의 미비, 과오, 기술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승인사항의 재검토 및 유지관리상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(이하 "공사수행자" 이라 한다.)가 지며,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"공사수행자" 는 이를 인지하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.
- (3) 과업의 범위는 "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" 의 요구사항으로 구성되며, "공사수행자" 는 과업의 완료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2.1.2 협의

"공사수행자" 는 공사 착수 전에 업무수행 공정 및 수행 방법에 관하여 "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" (해당 사업장 담당자)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.

2.1.3 불명기 사항

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본 공사범위 내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.

2.1.4 해석

본 과업지시서 내용 해석상 차이가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

- 2 -

결정한다.

2.1.5 용어의 정의

본 과업 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.

- (1) "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" :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, 시행자로 명시된 대상
- (2) "공사수행자" : 본 계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명시된 대상
- (3) 종합정밀점검 :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상태를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.
- (4) 시정보완 :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소방시설 지적사항을 시정 및 보완을 말한다.

2.1.6 "공사수행자" 의 업무수행 자세

- (1) "공사수행자" 는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 규칙 등 관련법령을 준수 한다.
- (2) "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" 이 계약내용에 제시한 사업추진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 다만 외부기관과 관련된 일정 변경이나 "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" 의 사정으로 인한 일정변경에 의한 사항은 "공사수행자" 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2.1.7 업무 협조

- (1) "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" 은 "공사수행자" 의 요구에 의해 "학교 사업장" 이 보유한 소방공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.
- (2) "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" 가 소방특별점검(소방시설 이상시 등) 요구시 "공사수행자" 는 기술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.

2.1.8 "공사수행자" 의 조직과 기술인력 확보

- (1) "공사수행자" 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공사수행 조직을 구성하고, "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"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조직된 인력의 교체 또는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.
- (2) 공사수행조직은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등을 포함한 책임 기술자와 적정한 기술 인력으로 구성한다.
- (3) "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" 은 조직된 공사수행 조직의 보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, "공사수행자" 는 요구된 지시를 1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하며, 2회 이상 요구된 내용을 이행치 않을 경우는 경고조치 할 수 있다.

2.1.9 대가의 지급

- (1) "공사수행자" 은 공사시행(완공보고서 작성) 후 공사대가를 "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" 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"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" 은 공사대가를 공사시행(완공보고서 작성)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2.1.10 계약의 변경 및 해지

- (1) "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" 의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변경하거나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명시하여 "공사수행자"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(2) "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" 은 "공사수행자" 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(3)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책임은 "공사책임자" 에게 있으며, 이에 대한 과태료 납부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.

2.2 공사범위

2.2.1 소화설비

- (1) 소화기(분말소화기, CO2 소화기, 확산소화기,하론소화기)
- (2) 스프링클러설비
- (3) 소화전설비
- (4) 소화 약제설비(하론)

2.2.2 경보설비

- (1) 자동화재 탐지설비
- (2) 방송설비
- (3) 화재PCS설비

2.2.3 피난설비

- (1) 유도등(피난구)
- (2) 비상조명등
- (3) 완강기.구조대

2.2.4 소화용수설비

- (1) 소화수조
- (2) 상수도 소화용수설비

2.2.5 소화활동설비

- (1) 옥외소화전설비
- (2) 연결살수설비

2.2.6 기타설비

- (1)연소확대 방지시설(내장재, 방화문)
- (2)방화샷터시설

2.2.7 위 설비에 대한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시정보완공사.

III. 공사지침

3.1 공통사항

- 3.1.1 본 공사를 수행함에 학생들의 수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.
- 3.1.2 시정보완공사 후 학교담당자 및 소방관이 확인하여 불합격시 정해진 기간내 재시공한다.
- 3.1.3 공사자의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공사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한다.
- 3.1.4 작업복장(업체복장) 및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공사자가 책임진다.
- 3.1.5 공사 중에도 화재감시 기능이 되어야하며, 이에 대해 미 조치로 인한 화재사고는 공사자가 책임과 보상을 하여야한다.

3.2. 적용법규

- 3.2.1 소방시설공사업법, 동 시행령, 시행규칙.
- 3.2.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, 동 시행령, 시행규칙.
- 3.2.3 화재안전기준(NFSC).
- 3.2.4 전기설비기술기준령 및 시행규칙.
- 3.2.5 한국공업규격.
- 3.2.6 전기용품안전관리법.

IV. 공사 성과품의 제출

- 4.1 공사완료 후 공사수행자는 공사결과물(완공서) 와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.